

ISMS-P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)의 법적 근거와 인증기준 조사

과목명: 개인정보보호법
sk쉴더스 25기 문서영

제출일: 2025년 6월 12일

1.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법적 근거와 고시명, 주무부처에 대해 설명하시오.

- 법적 근거

정보보호 부문

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3•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3조의 2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개인정보보호 부문

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2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2부터 제34조의 8까지의 규정

- 고시명
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

- 주무부처

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개인정보보호위원회

2.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기준을 ISMS와 ISMS-P로 구분 설명하시오.

인증	구분	분야
ISMS	관리체계 기반 마련	관리체계 기반 마련
		위험 관리
		관리체계 운영
		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
		정책, 조직, 자산 관리
		인적 보안
		외부자 보안
		물리 보안
		인증 및 권한 관리
ISMS-P	보호대책 요구사항	접근통제
		암호화 적용
		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
		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
		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
	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	사고 예방 및 대응
		재해복구
		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
		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
		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
		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
		정보주체 권리보호